
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사유를 규정함(안 제9조, 제9조의2 신설).
-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게 어선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어선건조·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어선건조·개조업자가 건조·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어선 건조·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제2호).
- 어선건조·개조업자가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의 선체 등을 임의로 변경·설치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23조제2항).
-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 취소를 청문의 사유에 추가함.(안 제38조제1호)
-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 신설에 따른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(안 제43조1의2, 제44조제1항2의2, 제53조제1항제5호).

II. 검토의견

1. 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어선 건조·개조 중지 명령 부과 필요(부칙 제2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 제9조제1항은 어선을 건조·개조 또는 수리 하는 사업인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“어선건조·개조업자”로 정의하고 있음.

현행법 제8조가 어선을 건조·개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, 어선의 건조·개조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안 제10조제2항제2호는 어선건조·개조업자가 어선 건조·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어선의 건조·개조의 중지,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그런데, 개정안 부칙 제2조가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며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이 법 시행 후 1년간은 ‘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한 자’와 ‘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’가 동시에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,

‘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한 자’는 어선건조·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·개조할 경우 어선의 건조·개조의 중지 명령 등을 받게 되나, ‘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’는 이 법상의 ‘어선건조·개조업자’가 아니게 되어 어선 건조·개조 중지 명령 등을 받지 않게 되므로 어선건조·개조업을 유예기간 내내 끝까지 미룬 자가 유예기간 내 일찍 등록한 자보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.

- 따라서,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‘어선건조·개조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’가 개정안 제10조제2항의 적용을 받도록 부칙 제2조제2항을 신설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부칙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	부 칙
제2조(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할 수 있다.	제2조(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등록 전에도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선건조·개조업자로 본다.

- 그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